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1. 4. 20 선고 2019가단55550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자유라이프

담당변호사 박기혁

피 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수인

담당변호사 변명섭, 이형오

변론 종결 2021. 3. 16.

판결 선고 2021. 4. 20.

주 문

1. 피고와 C 사이의 2016. 3. 29.자 채무변제합의(1)를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가. 35,867,97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을 양도하고, 주식회사 D에게 위 채권을 C에 게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 제1, 2항 및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73,893,27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소외 C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948호 양수금 사건에서 'C은 원고에게 3,00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3,957,321,352원 및 그 중 1,578,226,881원에 대한 2011. 9.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1%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판결을 2016.12. 22. 선고받아 위 판결은 2017. 1. 10. 확정되었다.

2) 위 사건에서 C은 2015. 12. 29. 원고의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여 2016.1. 20. 본안으로 이전이 되었고, 2016. 2. 24. 변호사를 선임하여 응소하였고, 제2회 변론기일인 2016. 9. 29. 증인신문을 진행하고 2016. 11. 10. 제3회 변론기일이 지정되었다.

나. 피고의 C에 대한 지급명령 신청 및 강제집행

1) 피고는 2016. 3. 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익산시법원 2016차293호로 C을 상대로 6,000만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6. 3. 10. 이를 발령받아 C에 게 2016. 3. 14. 송달되었고, 위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은 2016.3. 29. 확정되었다.

2) 피고는 2016. 10. 21. 이 사건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삼아 C의 소외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대한 급여채권(피압류채권액 73,893,270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2016. 10. 25. 그에 따른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결정을 받아 이는 2016. 11. 24.

확정되었다.

다. C의 무자력

C은 피고의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 무렵부터 현재까지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대상인 급여채권 외에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원고에게 채무를 부담하는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다.

라. C과 피고의 관계

피고는 C과 남매지간이다. 피고가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의해 소외 회사로부터 추심한 금액은 35,867,970원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법원의 국토교통부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지급명령은 C과 피고가 채권·채무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C의 채권자들이 급여채권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피고가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C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 방법으로 상호 모의하여 확정된 것이므로, 그기초가 되는 C과 피고 사이의 채무변제계약 행위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설령 피고가 C에 대하여 실제로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채무변제계약 행위는 채권자 중 1인인 피고에게 다른 채권자들에 비하여 우선변제를 받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상호 모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여전히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C과 피고사이의 채무변제계약 행위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주위적으로 73,893,27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예비적으로 35,867,97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을 양도하고, 소외 회사에 위 채권을 C에게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C에게 실제로 금전을 대여해 준 정당한 채권자로서 그 채권에 기하여 이사건 지급명령을 받은 후 강제집행절차를 통하여 채권의 변제를 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는 C과 채무변제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고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도 않는 다

다. 판단

1) 사해행위 여부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1 내지 3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지급명령의 기초가 된 피고와 C 사이의 채무부담행위는 진정한 채권으로 인정되기에 그 증거가 부족하고, 설령 일부 채권을 진정한 채권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C의 사실상 유일한 적극재산인 급여채권을 강제집행을 통해 압류·전부받게 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전체적인 행위는 실질에 있어 위 급여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한 것과 다를 바 없으며, 이로 인하여 C은 채무초과 상태가 심화되었고, 나아가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속하던 C의 급여채권은 결과적으로 피고에 대한 우선변제의 수단이 되었으므로, C과 피고 사이의 2016. 3. 29.자 채무변제합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별다른 적극재산 없이 원고에게 다액의 채무를 연체하였던 C에게는 그 사해의사도 인정된다.

- ① 피고는 C에게 2014. 10. 22. 6천만 원을 변제기 2015. 3. 22., 이자 연 10%로정하여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계좌에서 C의 계좌로 2014. 10. 22. 40,000,000원, 2014. 11. 17. 2,000,000원이 이체되었을 뿐이다. 피고는 C에 대한 일부 대여금은 C이 운영하던 노래방의 인테리어 공사를 한 업체에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대여하였다고 하나, 을 제6호증의 1, 2, 을 제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 ② 피고는 C으로부터 위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받은 내역도 없으며, 당시 차용증을 작성한 사실이 있으나 이를 분실하였다고 하면서 증거로 제출하지 않고 있다.
- ③ 피고는 이 법원 2016카단361 부동산가압류 신청을 한 후 강제경매절차에서 채권을 추심하지

못해 C의 급여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를 통해 자신의 채권의 만족을 얻은 것이라고 하나 위와 같이 부동산가압류 신청을 한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진정한 채권자임을 인정하기 어렵다.

④ 설령 이 사건 지급명령의 기초가 된 채권 중 입금사실이 인정되는 일부 채권을 진정한 채권으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C이 원고가 청구한 소에 대해 응소하기 시작한 직후 이 사건 지급명령을 받아 위 소가 종결될 무렵 C의 급여채권을 압류·전부받았고 피고와 C이 남매 사이인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에 대한 우선 변제의 목적으로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처음부터 C의 유일한 재산인 급여채권을 피고에게 사실상 양도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 사해의사 및 악의

그렇다면 피고가 C을 상대로 이 사건 지급명령을 구한 원인으로 피고와 C 사이에 위 지급명령에서 구하는 청구금의 변제를 목적으로 하는 가장의 법률행위가 존재한 다고 볼 수밖에 없는바, 피고가 C을 상대로 이 사건 지급명령을 하여 이에 대한 이의 를 하지 않아 2016. 3. 29.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C은 그 일시경 피고와 이 사건 지급명령에서 구하는 금원에 대한 변제를 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다고 추인할 수 있고,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3) 취소의 범위 및 원상회복의 방법

따라서 C과 피고 사이의 2016. 3. 29.자 채무변제 합의는 취소되어야 하고, 전부채권자인 피고가 제3채무자인 소외 회사로부터 급여채권 중 35,867,97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원고에게 이미 지급받은 위35,867,97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을 양도하고, 소외 회사에게 위 채권을 C에게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원상회복의 범위와 관련하여 주위적으로 피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73,893,270원을지급받은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위 금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사해행위 취소 및 예비적 원상회복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주위적

원상회복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판사 한진희

[[변경된] 별지]

목록

전주지방법원 2016타채7621호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확정으로 []
[] 으로부터 []
[] 에게 이전된 [] 이 주식회
사 [] 에 대하여 갖는 이하의 채권 중 주식회사 [] 의 변제로 소멸한 35,86
7,970원 상당액을 제외한 부분

압류 및 전부할 채권의 표시

금 80,000,000원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익산시법원(2016자293 대여금) ✓
금 13,800,970원 (이자: 2014. 10. 28.부터 2016. 3. 14.까지 연 10%, 2016. 3.
15.부터 2016. 10. 21.까지 연 15%의 자 비율에 의한 본)
금 57,100원 (묵측절차비용)
금 26,200원 (집행비용: 인지 4,000원, 송달료 22,200원)
합계금 73,893,270원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대위 수행하는 금표(본분 및 배수당) 및 매년 8월과
12월에 수행하는 기입수당(상여금) 중 제세공과금을 뺀 잔액의 1/2씩 위 청구금
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
여 민사집행법 시행령이 정한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
액, 또한 국민 기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민사집행법 시행령이 정한 금액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및 위 청구금액에 달하지 아니한 사이에
퇴직한 때에는 퇴직금 중 제세공과금을 뺀 잔액의 1/2씩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
까지의 금액, 끝.

1) 원고는 2016. 3. 29.자 채무변제계약이라고 기재하였으나 보다 적합한 채무변제합의로 바꾸어

기재한다.